

販売代金 回収를 위한 어음·手票 実務

I. 어음(手票)의 発行과 그 要件

1. 発行-作成과 交付

어음(手票) 発行은 어음面에 어음要件을 적하고 発行人이 記名捺印하는 畫面 作成 行為와 그것을 상대방(受取人)에게 引渡하는 交付 行為의 두 단계로 성립한다.

交付行為의 性質에 대해서는 어음 発行의 ① 成立要件, ② 効力要件, ③ 両者를 겸한다는 등 見解가 구구하여, 가령 記名捺印만 있고 発行人의 의사에 反하여 流通된 경우(交付가 없었던 경우), ① 偽造이다. ② 無効이나 善意의 第3者에게 책임이 있다는 등 견해가 갈리나 최근의

어음·手票의 要件

有力說은 어음 外觀解釈의 원칙에 따라 発行人은 記名捺印함으로써 어음상 権利의 外觀에 원인을 만든 자로서 善意의 제삼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 다만 이런 경우 発行은 無効라도 그 어음에 背書, 保証 등 다른 者들의 어음 行為는 어음行為 独立의 原則上(어 7) 有効하므로 그에 따른 의무를 진다.

2. 어음(手票)의 要件과 要件欠缺의 补充

어음(手票) 要件은 어음의 必要的 記載事項이므로 그 하나라도 빠지면 그 어음은 無効이다.
(어-1, 2, 75, 76, 수-1)

그러나 그 要件 중 약간의 사항은 예외이다.

換 어 음 (어 1)	약 속 (어 75)	手 票 (수 1)
1. 어음文言	1. 어음文言	1. 手票文言
2. 一定金額의 無条件의 支給委託	2. 一定金額의 無条件의 支給約束	2. 一定金額의 無条件의 支給委託
3. 支給人の 名称	3. 滿期	3. 支給人の 名称
4. 滿期	4. 支給地	4. 支給地
5. 支給地	5. 受取人 또는 그 指示人	5. 発行日과 発行地
6. 受取人 또는 그 指示人	6. 発行日과 発行地	6. 発行人의 記名捺印
7. 発行日과 発行地	7. 発行人의 記名捺印	
8. 発行人의 記名捺印		

要件欠缺의 补充

هم 결 사 항	換 어 음 (어 2)	約 束 어 음 (어 76)	手 票 (수 2)
1. 滿 期 험 결	一覽支給 환어음으로 본다.	一覽支給 약속어음으로 본다.	
2. 支 給 地 험 결	支給人の 名称의 附記地를 支給地로 본다.	發行地를 지급지로 본다.	支給人の 名称의 附記地를 支給地로 본다. 이것도 없으면 發行人의 名称의 附記地를 支給地로 본다.
3. 発 行 地 험 결	發行人의 名称의 附記地를 發行地로 본다.	發行人의 名称의 附記地를 發行地로 본다.	發行人의 名称의 附記地를 發行地로 본다.

II. 어음行為

1. 어음行為의 種類

換 어 음 : 發行, 引受, 參加引受, 背書, 保証

約束어음 : 發行, 背書, 保証

手 票 : 發行, 背書, 保証, 支給保証

어음行為方式 : 書面行為와 記名捺印

어음行為效果 : 어음債務을 진다. (但 例外 있음)

2. 어음行為와 行為能力

어음行為도 法律行為이므로 어음法, 手票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民法 商法을 一般法으로서 적용한다.

意思能力, 權利能力, 行為能力의 問題(自然人에 대한 無能力者制度 法人에 대한 性質上, 目的上, 法規의 制限問題에 관한 규정 등이 어음行為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3. 어음行為와 反社会 秩序 行為

어음行為 자체는 原因 관계와 상관없이 有効하지만(無因證券性) 어음行為의 원인이 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社会 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즉 反社会秩序行為이면(民 103) 그 原因 관계는 無効이므로 当事者間에서

는 原因無効를 이유로 支給 거절할 수 있다.

(人的抗弁)

다만, 善意의 제삼자에게 背載讓渡하면 人的抗弁權은 절단된다(어17, 수 22).

4. 어음行為의 意思와 表示의 不一致

① 非真意, 意思表示 (民107) 일정한 경우 無効

② 通情 虛偽表示 (民108) 当事者間に 無eff

③ 錯 誤 (民109) 取消 가능

④ 詐欺, 強迫 (民110) 取消 가능

이상 모두 善意의 제삼자에게는 無eff取消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表示主義) 民法上 규정하고 있으며 어음행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5. 어음行為와 代理

商事代理方式으로 本人 表示 없이도 된다는 商事特別規定이 있으나 (商48) 어음行為(文言證券性)는 民法 一般原則에 따라 顯名主議를 요구한다. (民114, 115 참조). 다만 判例는 譲名代理(代理人이 直接 本人名義로 어음상에 記名捺印하는 方式)도 유효하다고 한다 (大法院 1964. 6. 9. 1969. 9. 30判決) 또한 表見代理(民 125, 126, 129) 表見支配人(商14) 表見代表理事(商395) 등의 規定이 어음行為에도 적용한다 함은 이미 말한 바와 같다.

無權代理人이면 無權代理人 자신이 어음債務를 부담하고 支給하면 본인과 같은 권리を持つ 한다(어 8, 77-II, 手11)

III. 白地어음

1. 白地어음(手票)의 意義와 要件

가. 意 義

金額, 滿期 등 어음要件의 일부 또는 그 전부를 뒤에 取得者에게 補充시킬意思로써 일부 려 空白으로 둔 채 記名捺印하여流通시킨 어음이다. 補充한 때에 완전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未完成어음이라고도 한다. (要件欠缺어음은 불완전한 어음으로 無効이다.)

나. 要 件

- ① 発行人, 引受人, 保証人, 背書人 등 어음行為者의 記名捺印
- ② 그 記名捺印者가 白地補充權을 주고 있을 것
- ③ 미완성인 채로의 流通

2. 白地어음의 移転

背書만으로써 讓渡할 수 있고 受取人 白地하거나 白地背書이면 讓渡만으로써 할 수 있다.
(判例)

3. 白地어음의 支給提示

白地를 補充하여야 완전한 어음으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補充해야 有効하게 權利 行事할 수 있다. 白地인 채 支給 제시하면 支給 거절이 당연하고 履行遲滯에도 빠지지 않는다.

4. 補充權의 濫用

白地어음에 記名捺印한 어음債務者は 補充權의 濫用 즉 不當補充이 있더라도 그것을 모르고 또는 重過失 없이 취득한 자에게 对抗할 수 없다.

5. 実務上의 注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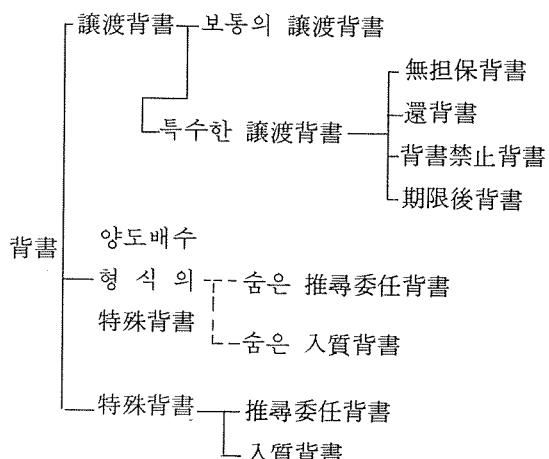
白地어음을 취득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미리 補充시킨 뒤에 받거나 補充權의援

與關係 또는 그 법정를 확인해야 한다. 또 미리 補充해 두거나 반드시 補充 후 支給顯示 등 權利를 행사해야 한다.

VII. 背書(讓渡)와 어음抗弁

1. 謙渡背書

가. 背書의 種類



나. 背書의 方式

(1) 背書의 場所

어음상(뒷면)이나 補箋 또는 등본(어13-1, 67-II,) (77-1) 手票는 手票上(뒷면)이나 그 補箋(16-1)

(2) 背書方式(어13, 手16)

① 完全背書(正式背書)

被背書人을 明示하고 背書人의 記名捺印

② 白地式背書(略式背書) (어13-II, 77-I,

手16-II)

被背書人의 表示 없이 背書人의 記名捺印만

③ 簡略書地式背書

背書文言조차 없이 背書人의 記名捺印만

④ 提示人支給式背書

白地背書와 같은 효력이 있다. (어12-II,

77-I)

(3) 기타 背書事項

有益的 記載事項

적으면 유효한 文言으로서 無擔保文言, 背書禁止文言, 推尋委任文言, 入質文言, 背書担当, 拒絕証言作成免除文言, 기타 換어음에 관계되는若干事項

② 無益的 記載事項

적은 文言만이 無効되는 文言으로서 背書에 붙인 条件(어12-I, 手15-I後段)對價文言등

③ 有害的 記載事項

적으면 背書全体를 無効로 하는 文言으로서一部背書(어12-II, 手15-II)支給人の 背書(手15-II)

※ 背書가 無効인 경우는 그 밖에도 背書要件 不滿 즉 記名만 있고 摻印이 없거나 摻印 대신에 捶印, 記名 缺이 摻印만 있는 경우(補充權援與時例外)가 있다. 背書人の 記名과 摻印 내용이 달라도 背書意思로서 摻印한 이상 有効하다. (通說判例)

(3) 背書의 効力

① 権利移転의 効力

어음상 또는 手票上의 一切의 権利가 背書人에게서 被背書人에게 移転하여(어14-I, 77-I, 手17-I) 이후 被背書人이 権利者가 된다. 背書로 人的抗弁이 절단되므로(어17, 77-I, 手22)被背書人은 背書人이 가졌던 權리보다 큰 權리를 취득한다.

② 資格援与의 効力

背書連続있는 어음 所持人은 그 사실만으로써 適法한 権利者로 推定한다(어16, 77-I, 手19) 따라서 支給人은 이 者에게 支給하면 詐欺 또는 重過 없는 한 免責된다. (어40-II, 手35) 또 善意의 背書 讓受人은 설혹 自己에게 背書한 者가 真實은 無權利者라 하더라도 그 어음상의 權리를 취득한다. (어16-II, 77-I, 手21)

背書의 連續은 形式上 連續으로 죽하고 또 形式上으로 하여야 한다. 즉 背書 중에 偽造背書,

意思無能力者背書, 또는 無權代理人의 背書, 유령会社의 背書 등이 있어도 形式上 連續하면 인정하나, 같은 사람이라도 被背書人名과 背書人名을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없으면 形式上 連續으로 볼 수 없다.

다만 形式上으로 背書가 連續하더라도 支給人이 實質上 無權利(實質上 背書不連續)를 정명하여 支給拒絕할 수 있으며 形式上 連續을 缺하더라도 提示人이 實質上 背書連續을 与証하여 權利를 행사할 수 있다.

背書中間의 白地背書는 補充 없이도 다음 背書人이 白地背書로 어음을 취득한 자로 보아 背書連續을 인정하고, 最終背書가 白地式이면 그補充 없이도 所持人을 背書連續에 의한 권리자로 推定한다. (어16, 77-I, 手17)

背書의 말소는 그 方法 여하, 権利者의 여부, 故意 過失을 묻지 말고 背書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어16-I, 77-I, 手17)

背書 中의 推尋委任背書는 背書의 連續에 영향이 없으나, 入質背書는 還背書 후라야 背書連續을 인정한다.

③ 担保的効力

換어음에서는 引受와 支給을, 約束어음과 手票에서는 支給을 担保한다(어15-I, 77-I, 手18-I). 즉 引受拒絕이나 支給拒絕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償還義務(遡求義務)를 진다.

提示人 支給式手票에 背書할 경우 역시 같다. 다만 無擔保文言이나, 背書禁止文言을 적었을 적에는例外이나, 後者이면 자기의 직접 被背書人에게만 책임을 진다(어15-II, 77-I, 手18-II).

2. 特殊한 讓渡背書

가. 無擔保背書

引受拒绝이나 支給拒绝된 경우 償還(遡求)義務 즉 担保責任을 지지 않는 背書이다.

나. 背書禁止背書

背書人이 自己의 직접 被背書人에게만 担保

責任을 지는 背書이다. (어15-I, 手18-II), 따라서 最終이음 所持人은 이 背書人에게만 遷求할 수 없다.

다. 期限後背書

支給拒絕証書作成後 또는 作成期間(어44, 77-I, 手4), 提示期間(어38, 手29)經過後의 背書를 말한다. (어20-I, 77-I, 手24-I), 指名債權의 효력만이 있다. 즉 権利移転의 효력과 資格援与의 효력만이 있고 担保的 효력과 人的抗弁切断의 효력이 없다.

라. 還背書(逆背書)

어음상의 債務者(發行人, 引受人, 背書人, 保証人, 參加引受人 등)에게 하는 背書를 말한다. (어11-III, 77-I, 手14-III), 다시 다른 데에 背書讓渡할 수 있다. 還背書에 갈음하여 背書를 말소해도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 (消極的 背書)

3. 特殊背書

가. 推尋委任背書

權利移転의 効力, 担保的 効力, 人的抗弁切断의 効力은 없고 다만 権利行使 代理權 援与의 効力만이 있다. (어18, 手23) 資格援与의 効力은 있다. 権利行事는 裁判上 裁判外 一切, 白地補充權, 利得償還請求權도 있다. 다시 背書讓渡하면 再推尋委任背書로 본다(通說判例).

推尋委任背書人の 死亡, 無能力者가 되어도 代理權은 소멸하지 않는다(어18-III, 77-I, 手22-III). 다만 실제로 推尋委任 관계를 철회한 경우에는 어음도 회수해야 代理權 消滅로써 對外的으로 대항할 수 있고, 推尋委任背書 抹消여부를 묻지 않고 새로운 背書를 해도 背書가 連續한 것으로 생긴다.

나. 入質背書

被背書人에게 権利移転의 効力은 없으나(通說) 어음상 모든 権利를 행사할 수 있으며 資格援与의 効力, 善意取得, 人的抗弁切断의 효력도 있다(어17-77-1). 担保的 효력은 견해

가 대립한다. 入質背書를 철회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背書로 반환 받아야 質權이 소멸한다.

4. 숨은 推尋委任背書와 숨은 入質背書

가. 숨은 推尋委任背書

形式의으로는 보통의 讓渡背書이나 實質의으로는 推尋委任을 목적으로 한 背書를 말한다.

숨은 推尋委任背書는 그 法律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효력을 달리하고, 그 學說이 구구하나 크게 나누면 信託讓渡說, 資格援与說 등이 있으며, 信託讓渡이 通說이다. 따라서 당사자간에는 担保的 効力이 없고, 抗弁權切断의 효력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惡意의 抗弁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 有力說이다.

나. 숨은 入質背書

실질적으로는 質權設定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보통의 讓渡背書를 하는 것을 말한다. 質權의 효력만을 인정해도 별문제 없다. 被背書人에게 善意 없는 한 抗弁權切断 효력을 인정한다.

5. 發行人的 指示禁止

어음 또는 記名式手票의 發行人이 指示禁止文言을 적으면 그 어음, 手票는 指名債權讓渡方式에 따라서만, 그리고 指名債權讓渡의 효력으로서만 양도 할 수 있다(어11-II, 77-I, 手14-II). 따라서 民法上の 指名債權讓渡의 対抗要件을 갖추어야 한다(民450).

즉 権利移転의 효력만이 있고 資格援与의 効力, 善意取得, 人的抗弁切断의 효력이 없다. 기타 提示証券性 相換証券性은 인정하나 入質背書나 期限後背書는 인정하지 않는다. 推尋委任背書는 견해가 대립한다.

6. 어음抗弁

어음 所持人한테서 어음상 청구를 받는 자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一切事由를 말한다.

가. 人的抗弁

어음債務者와 特定請求者間에 개인적 실질적

관계로 인한 抗弁으로서 善意의 제삼자에게 背書하면 切斷된다.

나. 物의抗弁

어음상의 청구자가 누구임을 물지 않고 언제나 对抗할 수 있는 抗弁이다

다. 惡意의 抗弁

어음의 惡意受得者에게 어음債務者가 그 前者에 대한 人的抗弁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抗弁을 말한다(어11-但, 手22 但) 다만 前前者에게 人的抗弁 事由 있음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는 惡意의 抗弁을 인정하지 않는다.

7. 善意取得

어음, 또는 手票 소지인한테서 (提示人支給式手票는 引渡에 의하여) 자기를 최종 被背書人으로 한 背書連續 있는 소지인은 설사 자기에게 背書 또는 讓渡한 자가 사실은 無權利者였다 하더라도 善意 無過失이면 그 어음(手票)의 権利者가 됨을 말한다. (어16-II, 77-I, 手21) 举証責任은 그 権利를 부인하는 支給人 또는 어음紛失者에게 있다. 推尋委任背書, 期限後背書에는 善意取得規定의 적용이 없다. 入質背書에는 적용된다. 다만, 期限後背書에는 少數認定說도 있다.

手票의 提示期間 후의 취득에 大法院은 견해의 대립을 보였으나 이를 부인하는 견해로 기울고 있다. (대법원 1970. 1. 27 판결 등)

V. 어음(手票)保証

1. 어음保証의 意義와 方式

가. 어음保証의 意義

어음(手票)上에 하는 保証으로서 다른 어음行為 즉, 発行背書, 引受로 인한 어음상 債務를担保하는 것이다. (다만 手票의 支給保証은 支給人만이 할 수 있다.) 일부 保証도 할 수 있다.

나. 어음保証方式

① 正式保証 - 被保証人을 표시하고 保証人の 記名捺印

② 略式保証 - 被保証人 표시 없이 保証人の 記名捺印만

다. 記名捺印場所

① 어음상(手票上)

② 위 補箋上

③ 등본상(背書人을 위한 保証에만)

2. 어음保証의 効力

가. 어음保証人の 義務

被保証人과 같은 어음債務를 진다. 利得償還義務는 없다. (어32-I, 77-II, 手27-I)

나. 어음保証人の 権利

支給한 때는 被保証人 기타 前者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다. (어32-II, 77-II, 手27-II)

權利行事時 被保証人에 대한 人的抗弁의 대항을 받지 않으며 또 支給提示받을 경우 被保証人에 대한 人的抗弁을 採用못한다(通説 - 有力한反對說이 있다)

기타保証人は 지급시에는 民法上의 求償權(民441)도 있으므로 選択性으로 행사할 수 있고 保証人이 数名이거나 어음상 保証人과 民事保証인이 있을 때 한 保証인이 지급하면 다른 보증인에게 求償할 수 있다. (民448)

3. 어음保証債務의 独立性

被保証人の 어음行為가 형식상 존재하는 한, 被保証債務가 실질상 無効 또는 取消되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아도 独立有効하게 성립한다.

(어32-II, 77-III, 手27-II)

4. 숨은 어음保証

保証의 목적으로 発行, 背書, 引受 등의 방법으로 하는 保証이다(去來上의 혼한 実情) 그 効력은 어음行為 자체에 따른 책임을 지고, 人的 관계만이 保証關係이다.

5. 어음保証과 民事保証과의 差異

① 民事保証은 契約이나 어음保証은 單獨行為이다.

- ② 民事保証은 主債務가 成立要件이나 어음保証은 어음行為 独立의 원칙상 주된 어음行為方式의 흠(要件不満) 이외의 어떤 사유로 無効더라도 독립하여 성립한다.
- ③ 民事保証은 主債務者가 불분명하면 성립하지 않으나(對人的) 어음保証은 発行人을 위한 保証으로 본다.
- ④ 民事保証은 催告, 檢索의 抗弁權이 있으나(連帶保証은例外) 어음保証人에게는 없다.
- ⑤ 民事保証은 主債務不履行時 債權者가 保証人에게 通知할 필요 없으나, 어음保証에서는 일정 기간안에 통지하여야 한다(45-II, 77-I)
- ⑥ 民事保証에서는 主債務者에 대한 請求 기타 時效中斷의 효력이 保証人에게 미치나 어음保証에서는 미친다(判例), 미치지 않는 다(少數說)로 견해가 대립한다.

VII. 提示와 支給

1. 支給提示의 意義와 効力

어음所持人이 支給人에게 지급받기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 효력은 遷求權保全의 要件이다.

2. 支給提示의 方法과 場所

支給提示는 꼭 支給人の 손에 받아 보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支給期日에 支給場所에 어음을 갖고 갔으나, 支給人の 不在 또는 行方不明 등으로 만나지 못하였어도 제시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銀行實務上으로는 支給期日에 支給場所로 된銀行이 所持하고만 있으면 提示의 效力이 있다. (일, 대심원 1916. 10. 25 판결

支給提示 장소는

- ① 支給場所를 적고 있으면 그곳
- ② 없으면 支給地 안에서의 支給人の 영업

소, 住所, 居所

- ③ 이것도 없으면 支給地 안에서 支給人을 찾아야 하고 찾지 못하면 그 곳에서 支給拒绝証書를 작성해야 한다.
- ④ 어음交換所 내의 제시도 有効하다.
- ⑤ 합의에 따른 支給場所의 변경은 어음에 적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 ⑥ 当座去來会社가 去來銀行을 支給場所로 적었을 적에는 支給場所 겸 支給担当者の 표시이다.

3. 支給 提示期間

- ① 一覽支給어음: 発行日字 후 1년간
- ② 確定日支給어음, 一覽後定期支給어음, 発行日字後 定期支給어음: 支給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去來日

提示期間은 除斥期間이므로 中斷, 停止, 延長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当事者간의 特約에 따른 提示期間은 유효하다.

3. 手票의 提示期間

- 1) 国内手票 10일간(手29-I)
- 2) 国外手票 発行地국과 支給地국이同一洲(地中海沿岸국과 유럽洲는同一洲로 본다)
20일간, 他洲이면 70일간(手29-II, III)
- 3) 政府發行手票 発行日字부터 1년간(예산회 69)

4) 提示期間의 計算

起算日(初日)은 手票上에 発行日字로 적은 날이고(不一致할때도)(手25-V), 初日 不算入이 원칙이므로(手61) 實地로 発行日字 다음날부터 10일이다. 期間의 末日이 法定休日이면 이에 이은 제1거래일까지 延長된다.

4. 先日字手票

實際의 發行日字보다 나중 日字를 發行日字로 적어서 發行한 手票이다. 그 적은대로 發行日字에서 10일간의 提示期間 안에만 支給提示할 수 있다면 手票에 滿期를 인정하는 것과 같이 되어 그 日字 전에도 支給提示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滿期를 적어도 그 적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본다(手28-II)

5. 支給과 어음相換

어음은 提示証券인 동시에 相換証券이므로 그 相換 없이는 支給拒絶할 수 있다(除權判決에 따른 때는例外) 強制執行 때도 해당하나 우리나라 실정은 手票訴訟 어음訴訟의 仮執行에서 実行 안되고 있으므로 지체없이 어음을 회수하여야 한다.

어음相換없이 어음金을 支給해도 무효가 아니라 당사자간에서는 유효하나, 善意의 제삼자의 손에 들어가면 二重支給 위험이 있다. (人的抗弁에 不過)

6. 支給과 免責

支給人은 詐欺 또는 重過失이 없으면 免責된다(어40-III, 77-I, 手35)

가. 詐欺, 重過失의 意義

惡意, 重過失은 相對方이 無權利者임을 아는 것 또한 조그만 주의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대하여, 詐欺란 無權利者임을 쉽게 証明하여 支給拒絶할 수 있는데도 故意로 지급하는 것이며, 重過失도 조금만 주의하면 쉽게 無權利者임을 証明할 수 있는데도 不在意로 支給拒絶 않는 것이다(通說). 즉 보통 善意, 惡意할 적에는 단순히 사실을 모르거나 아는 것을 말하는 데 대하여

「詐欺, 重過失」은 그 証拠方法을 모르거나 아는 것을 뜻한다.

나. 支給時의 調査義務

支給人은 오직 提示人の 형식적 자격만을 조사할義務가 있을 뿐, 실질적 資格과 提示人과 최종 被背書人과의同一性 調査義務도 없다(通說 어40, 77-I, 手35).

다. 当座去來約定의 免責約款

이 約款은 어음·手票上의 印影과 去來用印監과의 대조(肉眼에 의한)로 免責条件을 삼고 있으나, 判例는 그 밖에도 支給担当者(支給人)인 銀行에게一般的注意 의무도 있다고 한다.

7. 支給拒絶

提示期間 내에 한 適法한 提示에 대하여 支給人の 積極的拒絶 또는 支給人이所在不明으로 支給 못받으면 어음상 担保義務者(背書人, 換어음發行人, 手票發行人)에 대한 遷求原因이 된다.

8. 支給委託取消

어음發行인의 支給委託取消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手票發行인의 支給委託取消는 提示期間 경과 후에만 효력이 있다(手32-I).

그러나 사실상 手票發行인의 支給委託取消가 있으면 提示期間 經過전에도 支給拒絶하는 것 이 銀行의 실정이다(대법원 1964. 4. 28 판결)

